

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및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- 회부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3. 제안이유

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과징금의 징수·독촉 및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용
- 운영기금의 적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
- 비수익 노선의 선정 및 보상방법 등 명시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
이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그 주요 골자에 있어서는,

첫째, 과징금의 독촉 및 부과·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용

둘째, 운영기금의 조성, 적립 및 관리에 관한 내용

셋째, 수익성이 없는 노선 선정 및 본 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발생시 보상방법 등을 명시한 것으로 승인하여 좀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안 제6조 제1항,제2항 및 안 제7조 제1항에 표기된 운행결손과 운송결손은 구분에 필요성이 없을뿐더러 조례 해석에 혼동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운송결손으로 표기된 부분을 운행결손으로 수정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